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도시안전과)

의안번호	제306호
제 출 자	강수진의원 외 11명(2024. 5. 23.)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2022년 1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추가하고,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부부 거주 세대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화재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함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도시안전과

라. 입법예고 : 2024. 5. 17. ~ 2024. 5. 22.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추가하고,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부부 거주 세대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목적에서 조례의 근거법령을 다음과 같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¹⁾로 변경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1)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등에 다음과 같이 대상
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아.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자.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차.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
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 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